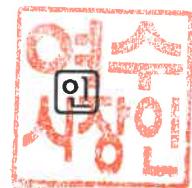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2 월 30 일

여 수 시 장 2022.12.30



여수시 조례 제1819호

붙임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  
례 1부.

##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여수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여수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여수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2조 중 “**의정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중 별지 제3호, 제5~8호, 15호 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가. · 나. (생 략)</p>	<p><b>제2조(정의)</b> ----- -----.</p> <p>1. ----- ----- ----- -----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b>&lt;신 설&gt;</b></p>	<p>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p>
<p>2.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특수관계사업자”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p> <p>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p> <p>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p>	<p><b>&lt;삭 제&gt;</b></p>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  
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같은 법률 제33

조의2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  
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  
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과 제6조에 따른 겸직신  
고 현황을 비교하는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여수시의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삭 제>

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물품·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⑤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여수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

#### <삭 제>

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직  
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  
련자에게 고문 · 자문 등을 제공  
하거나 해당 대리 · 고문 ·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  
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  
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  
가 있는 자

나.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자

다.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  
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  
는 자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으면 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  
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  
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  
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의결 · 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  
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  
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  
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  
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  
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위원장

<삭 제>

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개  
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윤리특  
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분야 업무활  
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  
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  
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

## <삭 제>

## 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여수시 및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 ② (생략)

<신설>

<삭제>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 수익**

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생 략)

2. 의회의 물품 · 용역 ·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삭 제>**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전가(轉嫁)-----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  
-----  
-----

## <신 설>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여수시 또는 여수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

## 가. 여수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여수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여수시가 고나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  
-----  
-----

## <삭 제>

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42조(간사) -----

-----

----- 총무팀장 -----.